

#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2.

발의자 : 설훈 · 김영진 · 이석현

이용득 · 조승래 · 오영훈

유은혜 · 김상희 · 안민석

소병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함. 그러나 시행계획 수립,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.

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자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.

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및 제18조).

##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수립”을 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기본계획을”을 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”로, “지방자치단체”를 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”로, “협조를”을 “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⑧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, 절차 및 제6항

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-----</u>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 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 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</p>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<u>기본 계획을</u>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<u>지방자치단체</u>, 「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, 대학·연구소 및 외식사업자 등에게 <u>협조를</u> 요청 할 수 있다.</p>	<p>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<u>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</u>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⑦ ----- <u>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</u> ----- 관계 중 <u>양행정기관의</u> 장, <u>지방자치단체</u> ----- <u>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</u> ----- .</p> <p>⑧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,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p>
<p>제18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)</p> <p>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,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, 농수산물유통공사 사</p>	<p>제18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)</p> <p>① ----- 시·도지사-----</p>

장,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----- -----.
	② (현행과 같음)